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989

발의연월일: 2024. 10. 29.

발 의 자:추미애·송옥주·전재수

부승찬 • 전종덕 • 박희승

박선원 • 오세희 • 한정애

진성준 · 서영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 의무 및 출석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의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야할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 결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국회에 출석하여 허위의 사실을 답변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 출석 요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때에는 허위의 사실을 답변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을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 및 권력분립원칙을 강화하 고자 하는 것임(안 제121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1조의2(허위 답변의 죄) ① 제121조에 따라 출석을 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때에는 허위의 사실을 답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답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위 진술의 죄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21조의2(허위 답변의 죄) ①
	제121조에 따라 출석을 한 국
	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
	원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때에는 허위의 사실을 답변하
	<u>여서는 아니 된다.</u>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답변한 사람은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